간통·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 관리에 관한

법률위반(대마)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7. 2009고단162,2009고단149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안동완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최철(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(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)을 징역 8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201,5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